

# 한돈농가 냄새 배출원 단위 현장조사 용역 입찰 공고 <긴급>

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입찰건명 : 한돈농가 냄새 배출원 단위 현장조사 용역  
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)

나. 용역 계약 기간 : 23년 7월 ~ 12월 말 (총 6개월)

다. 용역 계약 금액 : 45,000천원  
※ 세부 규정의 경우 한돈자조금 규정에 준용

라. 용역 범위 :

- 한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 및 냄새 물질 측정
- 현장조사를 통한 돈사 유형 및 형태별 배출원단위 산정

## 2. 참가자격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
- 위와 관련된 유사 연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대학 및 기관, 단체, 연구소
- 악취공인분석기관으로써 악취 정도관리를하고 있는 분석기관

## 3. 입찰일정

○ 입찰공고 기간 : 2024년 6월 14일 ~ 6월 24일 (한돈협회 및 나라장터 공고)

※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(약칭:국가계약법시행령) 제35조(입찰공고의시기)5항, 제43조(협상에의한계약체결) 1항 준용

○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: 2024. 6. 24(월), 17시 까지

- 접수처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3층 (사)대한한돈협회  
(E - mail 접수처 : rlagkwp@naver.com)
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

○ 심사위원회 계획(안) : 2024. 6. 26(수), 14:00

- 장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(사)대한한돈협회

- 협상 및 계약체결 : 2024. 6. 28(금)
- 유찰 : 유찰시 7일간 재공고하며, 2회 유찰시 적격심사로 협상 대상 선정
- 재공고 : 6/25 재공고 → 7/2 등록마감 → 7/3 심사위원회(제안서 심사 또는 재 유찰시 적격심사) → 7/5 협상 및 계약체결

※ 세부 일정 및 장소,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
#### 4. 제출서류

- 사업 제안서 1부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사업비 집행 계획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위임장(해당자에 한함) 1부
- 관련 사업 실적 증빙서

#### 5. 낙찰자 선정 :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35조 5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
-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심사기준표(별첨)를 참고하고,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
-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평가 한 후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,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
- 심사위원회는 대한한돈협회의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명단은 비공개
- 협상은 제안서 기술 능력평가(80%) + 가격평가(20%)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
(단,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%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)
-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

※ (세부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) 기술능력평가/정성적 평가분야의 ①(15)-②(15)-③(15)-④(15)순

-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
## 6. 연구용역비 한도

- 연구용역비 한도는 45,000천원(제세공과금 포함)으로 하되, 제안자가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, 제안내용과 사업비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 선정
- 연구용역의 특성상 연구용역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6%를 초과할 수 없음.

## 7. 입찰무효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

## 8. 기타사항

- 계획서 및 제안서 양식(첨부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·제출)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한돈자조금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 선발한 용역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 : (사)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김하제 과장(T. 02-581-9754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4일

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 협 회



<별첨>

# 한돈농가 냄새 배출원 단위 현장 조사 용역 선정 심사 기준표

□ 심사기준표

구 분	평가 항목	배 점	채 점		
기술 능력 평가	정량적 평가분야 (20)	① 사업 수행경험(실적) -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 하는가?	10		
		② 사업 수행 인력 전문성 (자격증, 경력) -인력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?	10		
	정성적 평가분야 (60)	① 용역사업의 이해도 -제안의 내용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?	15		
		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-목적, 사업내용, 추진절차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?	15		
		③ 사업계획의 타당성 -목적 및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타당하고 적합한 사업 추진방법, 절차, 일정이 타당한가?	15		
		④ 사업계획의 체계성 -목적 및 사업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 추진계획이 체계적인가?	15		
	가격 평가	입찰가격 평가 (20)	① 사업 예산의 적정 배분 -사업 소요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가?	20	
		<b>총점</b>	<b>100</b>		

※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%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.

	성 명	서 명
심사 위원		

# 한돈농가 냄새 배출원 단위 현장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

---

## 1. 사업목적

-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「양돈시설의 악취저감기술 연구」를 발주하여 전국 양돈 농가별 돈사 형태 및 분뇨처리방식의 현황을 조사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악취 배출원 단위를 산정( $OU/m^3 \cdot \text{두}$ )을 진행하고 있음.
- 악취 배출원 단위 데이터의 경우 축사 환경조건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됨으로 기초자료 확보 및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연구 용역 추진이 필요함.

## 2. 사업 추진 절차

### 1) 농가를 섭외하여 현장 조사 추진

- 한돈 농가 협조 등을 받아 농장 환경 실태 및 냄새 발생 현황 조사 추진
- 돈사 형태 및 분뇨처리 방식에 따라 현황조사 추진(과업 시기와 조사 여건 등에 고려하여 진행)

### 2) 돈사 냄새 발생 특성 조사

- 현장조사 및 기존 환경부·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용역 자료를 참고하여 돈사 유형별 냄새 원인물질 농도와 구성 비율 조사
- 현장 측정을 통하여 배출원 단위 산정

## 3. 조사 방법

### ○ 조사항목 및 방법

- 복합악취 및 돈사에서 발생하는 대표 냄새물질(암모니아 등) 농도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
- 한돈농가 기본 현황 조사 및 수행

## 4. 향후 이용 방안

- 한돈농가 양돈장 축산냄새 적정관리 방안 및 데이터 수집 후 대응 방향 마련